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36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안 제24조제5항)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희용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4. 20.
3. 회 부 일 : 2026. 4.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을 수립·총괄, 이용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하여 그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

III. 검토의견

1.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안 제24조제5항)

개정안은 국가가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생략)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가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에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6685호, 2019. 12. 3. 일부개정)¹⁾을 통하여 문화체

1) 「도서관법」(법률 제16685호, 2020. 6. 4. 시행)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음.²⁾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행법 제24조³⁾에 근거하여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을 수립 및 총괄하고, 조직은 1관 2과 구조로 정원 21명에 공무원 등 별도정원 14명 총 3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1층에 장애인정보누리터를 운영하고 6층에 사무공간

-
8.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 ③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 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3) 「도서관법」

제24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①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작·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4.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7.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11.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4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3항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제출, 제4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두고 있음.⁴⁾

현행법 제19조제2항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분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세종도서관도 별도의 독립청사를 두고 있는 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및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있어왔음.⁶⁾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시설의 공동 활용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접근시설·편의시설의 확충이나 점자·음성 등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국립장애인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⁷⁾, 이에 따라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음.⁸⁾

4) 참고1.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황

5) 「도서관법」

제19조(국립중앙도서관의 설치 등)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6) 김영일, 「국립장애인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2020.

7)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2024., p.13.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한 차질 없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문화·예술활동이 보다 촉진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법령상 대부분 기관의 설치·권한만 법률에 규정하고 청사 확보는 국가재정, 국유재산 관리, 청사 수급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개별법에 독립청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개정안에 대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 유형별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8) 참고2.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현황

공감하나, 특정 건물의 건립을 강제하는 조항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가 힘들어 법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법률 용어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독립청사 건립’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입법례와 법체계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와 함께 관계기관 의견 및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1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연혁

- 2007. 5.22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설립 * 국립중앙도서관장 산하
- 2009. 4.13 :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설
- 2012. 8.18 :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 도서관법 제45조 개정('12.2.17).
- 2016. 1. 1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20. 6. 4 : 문체부장관 소관 1차 소속기관 승격**
* 도서관법 제45조 개정('19.12.3), 시행('20.6.4.)

□ 주요 임무 (도서관법 제24조)

-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 교육 및 전문인력 훈련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국내·외 기관(단체) 지원 및 협력 등

□ 조직 및 인원

- 조직 : 1관 2과(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 인원(정/현원) : 21명/19명 ※ 별도정원(공무직/기간제 등) : 14명

□ 시설 및 예산

- 시설현황
 - 장애인정보누리터 : 국립중앙도서관 1층(324㎡) * 수용인원 : 39석
 - 사무공간 : 국립중앙도서관 6층(658㎡) * 서고 부재로 장서개발 및 자료서비스 한계
- 예산현황
 - 주요사업비: 19,024백만원(도서관 운영 17,150백만원 / 정보화 1,874백만원)
 - 기본경비 : 1,600백만원(인건비 1,403백만원 / 기본경비 197백만원)

□ 장애인 서비스 현황

- 장서 현황 : 105,964책, 8,726편
※ (제작) 96,776책, 6,475편 / (기증) 4,235책, 2,251편 / (구입) 4,953책
- 장애유형별 대체자료 제작 현황 : 96,776책/6,475편
※ (시각) 48,552책/588편, (청각) 3,106책/5,021편, (발달) 154책/4편, (공통) 44,964책/862편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및 원문자료 구축 현황 : 목록 563,037건, 원문 264,406건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추진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배경

- 현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간 협소*** 및 접근성 문제와 함께 **장애유형별 이용자 서비스 한계**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필요

* 장애인정보누리터 324㎡(국립중앙도서관 1층), 사무실 658㎡(국립중앙도서관 6층)

□ 추진 경과

- **(‘24.12.~’25.3.)**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
- **(‘25.3~4월)** 기재부 1차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미선정)
* 미선정 사유: ❶사업계획의 적정성(시설면적 등) 미비 ❷사업추진 시급성 부족(이용자 수 저조)
- **(‘25.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업무협약*
*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문화예산과(‘25.4.), 수원시 제1부시장 면담(‘25.4.) 등
- **(‘25. 5.16)** 기재부 2025년도 비축부동산(국유재산) 사용신청
- **(‘25. 8.27)** 기재부 3차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시설면적 축소(21,500㎡→16,400㎡) 등 1차 예·타 미선정 사유 보완 후 재신청
- **(‘25. 9.16)** 장애인 단체 후보지 현장방문 및 건립 촉구 결의문 발표
- **(‘25.10.31)** 비축부동산 사용신청 → 불승인(10.27) / 예·타 재평위 심의 → 미선정*
* 미선정 사유: ❶사업추진 시급성 부족(이용자 수 저조) ❷기존(서울) 대비 신규(수원) 접근성 낮음
- **(‘25.12.23)** 건립 대상 부지 일부 경찰청* 사용에 따른 기재부 협의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건립 예정(부지면적 7,000㎡) → 잔여 부지(34,823㎡) 활용계획 미정
- **(‘26. 2.25)** 재경부 2026년도 상반기 비축부동산(국유재산) 사용신청

□ 건립 개요

건립개요	
후 보 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386번지(국유지)
시설규모	• 대지면적 : 34,823㎡(약11,320평) • 연 면 적 : 16,400㎡(지하1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장애유형별 서비스영역, 일반자료실, 문화·창의적 소통공간, 교육·연구시설, 주차장 등
총사업비	약 963억원 (부지비 별도) * B/C 1.061
사업기간	2027년 ~ 2031년



□ 향후 일정

- 예·타 선정 관련 관계부처 지속 협의 및 예·타 대상사업 재신청('26년)